

쿨투라 운영규정

제정일 2012. 7.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산학협력단)의 학교기업 쿨투라의 효과적 운영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쿨투라는 학생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학연계 교육사업의 기능과 바른 먹거리의 생산, 판매, 용역 제공 등을 통한 수익사업을 수행한다.

제3조(사업) 쿨투라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비알콜음료개발 및 판매
2. 서양음식 개발 및 판매
3. 한식음식 개발 및 판매
4. 케이터링사업
5. 화훼업
6. 조리 교육
7. 웨딩서비스업
8. 리사이클숍운영
9. 업태, 업종과 관련된 전공의 실습
10. 기타 쿨투라의 목적 수행에 필요한 부대사업 추진

제2장 조직 및 임무

제3조(조직) 쿨투라는 원활한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직제와 조직을 둘 수 있으며 타 직제와 겸직 가능하다.

- ① 대표이사(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 ② 팀장 및 사업담당
- ③ 연구원
- ④ 운영위원회

제4조(센터장) ① 센터장의 임명에 관련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운영규정」에 따른다.

- ②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1. 사업계획 수립
2. 사업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3. 사업 결과의 보고 및 성과 활용
4. 기타 쿨투라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팀장 및 사업담당) ① 쿨투라는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1인의 팀장과 1인 이상의 사업담당을 둘 수 있다.

② 팀장은 센터장을 보좌하여 쿨투라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관장한다.

③ 사업담당은 팀장을 보좌하여 쿨투라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실무를 담당한다.

제6조(직원, 매니저) ① 쿨투라는 효과적인 제작사업 수행을 위해 직원 및 매니저를 둘 수 있다.

② 학교기업 쿨투라 채용직원 및 매니저의 처우는 「산학협력단 취업규칙」에 따른다.

제7조(운영위원회) ① 쿨투라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 구성은 「산학협력단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위원회는 센터장의 요청에 의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1.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쿨투라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기타 쿨투라 운영에 관련한 중요사항

제3장 사업운영

제8조(운영계획 및 결과보고) ① 센터장은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목표, 예산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산학협력단의 협의를 거쳐 운영을 위임받은 스쿨 원장에게 보고하며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한다.

② 시행에 관련한 주요 변경 사항은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혹은 쿨투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득한다.

③ 센터장은 회계연도 종료 전 목표대비 실적, 개선사항 등을 포함한 운영결과를 산학협력단의 협의와 운영을 위임받은 스쿨 원장을 거쳐 총장에게 보고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세칙) 쿨투라 운영에 관하여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장 관할기관의 법령과 「산학협력단운영규정」에 따른다.

제3조(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 이전에 시행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